

한국한성화교중고등 학교규칙

[2021. 7.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중화민국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의 중국명칭은 ‘한국한성화교중학’으로 하고 한국명칭은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76(연희동 89-1)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본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운영한다.

제6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2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8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중한 양국의 국경일
2. 중한 양국의 국정 공휴일
3. 개교 기념일(5월5일)
4. 여름 방학
5. 겨울 방학
6. 봄방학

② 제①항 제4호, 제5호의 방학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나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등교 및 실습을 할 수 있다.

⑤ 휴업일이라도 그에 관한 행사를 실시할 때는 수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총 27학급으로 하며, 중학교는 학년당 4학급씩, 고등학교는 학년당 5학급씩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총 1,485명으로 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55명씩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학년별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년별 정원	학교 총정원
중학교	1(7)	4	55	220	1,485명
	2(8)	4	55	220	
	3(9)	4	55	220	
	소계	12	165	660	
고등학교	1(10)	5	55	275	
	2(11)	5	55	275	
	3(12)	5	55	275	
	소계	15	165	825	
계		27	330	1,485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및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육과정) 본교의 고등부는 「대만 진학반」 과 「한국 대학 진학반」 을 두며, 각 반은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5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고사 및 과정수료의 인정)

- ① 정기 고사는 2번의 중간고사와 한번의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각 학년은(중1부터 고2까지) 매주 세 시간의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한다.(단 고2, 고3 한국대학 진학반은 한국 교재 위주로 수업한다.)
- ④ 학기말 시험 결과에 따라 A, B, C, D, F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F 등급일 경우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통과시 “P”로 표시함)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제13조(입학)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인의 자녀
2. 외국에서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3. 국내학교에서 학업지속이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학운위 심의 필요)

② 입학 허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 심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면접, 필기시험 등의 절차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하며 필요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1.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 부모와 학생의 여권 사본,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부모와 자녀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 내국인인 경우 : 부모와 학생의 여권 사본,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충적으로 학생의 6학기 이상 외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사본)
3. 귀화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국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 : 학부모의 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부모와 자녀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학교장 직인 날인)

③ 내국인은 학년별 정원의 30%를 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의 학년별 정원 30퍼센트 이내 기준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외국인학교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제13조 제2항의 입학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본교에 입학허가받았거나 입학한 자는 즉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 본교를 휴학 또는 중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동일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으로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전·편입학) 본교의 전·편입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입생 선발과 같은 모든 입학절차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휴학)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이상인 자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인(친권자)의 서명을 한 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퇴학)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서명과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수료·졸업)

- ① 별도의 ‘학생성적산출규정’에 의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평상시의 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 ② 별도의 ‘학생상별규정’으로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중화민국교육법에 저촉 되지 않는 자에게 규정된 서식에 의해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수업료·입학금·기타 비용 징수·장학금

제19조(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는 매년 해당 연도 학교 예산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한다.

제20조(장학금) 본교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장학금
2. 화교경제인단체 장학금
3. 한성화교협회 장학금
4. 기타 장학금

제7장 교장·교원의 자격 및 임무

제21조(교장의 자격 및 임무) 본교의 교장은 다음 각호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대만 교무위원회 및 교육부 규정에 따라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고 중등 교육 및 학술에 기여한 자.
3. 학교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

제22조(교원의 임용 기준 및 면직) 본교 교원 임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그 과목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필요 시 본교의 교원은 대만 교무위원회의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원 면직 기준은 본교 교직원 수칙과 교직원 평가실시 요점에 의거한다.

제8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3조(학생 포상) 본교는 ‘학생상별규정’에 의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별도의 ‘학생상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경고, 과실(소), 과실(대), 퇴학경고단계, 퇴학처분 또는 제적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5조(퇴학처분) 본교는 별도의 ‘학생상별규정’에 의하여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26조(학칙개정) 본교의 학칙을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설립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27조(시행세칙) 본교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내국인의 학년별 정원 30퍼센트 이내 기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학년별 정원 초과 내국인은 전출 등에 의한 사유로 자연감소될 때까지 재학할 수 있음.